

◆ 회생 계획안(2차 수정안) 요지 ◆

(채무자: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)

1.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

가. 회생담보권(대여금채권)

■ 한국산업은행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2.5%는 출자전환하고 67.5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44%는 제2차 연도(2018년), 48%는 제4차 연도(2020년), 8%는 제5차 연도(2021년)부터 제6차 연도(2022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■ 농협은행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4%는 출자전환하고 86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2%는 제1차 연도(2017년)에 변제, 80%는 제3차 연도(2019년), 10%는 제4차 연도(2020년)부터 제5차 연도(2021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8%는 제6차 연도(2022년)부터 제7차 연도(2023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■ 한국수출입은행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9.5%는 출자전환하고 30.5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10%를 제1차연도(2017년)에, 10%를 제3차 연도(2019년)부터 제4차 연도(2020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10%를

제5차 연도(2021년)에 변제, 5%를 제6차 연도(2022년)에 변제, 45%를 제7차 연도(2023년)부터 제9차 연도(2025년)까지 균등 분할 변제, 20%를 제10차 연도(2026년)에 현금으로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■ 경남은행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2%는 출자전환하고 58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10%를 제1차연도(2017년)에, 10%를 제2차 연도(2018년)부터 제3차 연도(2019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10%를 제4차 연도(2020년)에 변제, 5%를 제5차 연도(2021년)에 변제, 45%를 제6차 연도(2022년)부터 제8차 연도(2024년)까지 균등 분할 변제, 20%를 제9차 연도(2025년)에 현금으로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■ 건설공제조합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%를 제1차 연도(2017년)에 현금으로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■ 신한은행/우리은행/하나은행/대구은행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2%는 출자전환하고 58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 연도(2017년)에 현금으로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나. 희생담보권(미발생구상채권)

■ 건설공제조합/자본제공제조합/엔지니어링공제조합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%를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■ 기타 보증 기관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8%는 출자전환하고 12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10%를 제1차 연도(2017년)부터 제2차 연도(2018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15%를 제5차 연도(2021년)부터 제7차 연도(2023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40%를 제8차 연도(2024년)부터 제9차 연도(2025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35%를 제10차 연도(2026년)에 현금으로 변제. 단,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(2018년)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다. 희생담보권(상거래채권)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%를 제1차 연도(2017년)에 현금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라. 회생담보권(임차보증금 반환채권)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. 만약,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
-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현금 변제합니다.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 100%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변제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
-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경우 새로운 임대보증금이 종전 임대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종전 임대보증금과 새로운 임대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시인된 총채권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서 미수임대료 및 기타 공과금을 포함한 관리비 등을 차감후 금액을 종전 임대차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2.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

가. 회생채권(대여금채권, 구상채권)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8%는 출자전환하고 12%는 현금변제

- 현금변제할 금액의 10%를 제1차 연도(2017년)부터 제2차 연도(2018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15%를 제5차 연도(2021년)부터 제7차 연도(2023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40%를 제8차 연도(2024년)부터 제9차 연도(2025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35%를 제10차 연도(2026년)에 현금으로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나. 희생채권(미발생구상채권)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8%는 출자전환하고 12%는 현금 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10%를 제1차 연도(2017년)부터 제2차 연도(2018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15%를 제5차 연도(2021년)부터 제7차 연도(2023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40%를 제8차 연도(2024년)부터 제9차 연도(2025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35%를 제10차 연도(2026년)에 현금으로 변제. 단,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(2018년)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다. 희생채권(상거래채권)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6%는 출자전환하고 14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25%를 제1차 연도(2017년)부터 제5차 연도(2021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20%를 제6차 연도(2022년)부터 제7차 연도(2023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15%를 제8차 연도(2024년)에 변제, 40%를

제9차 연도(2025년)부터 제10차 연도(2026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3) 에스티엑스엔진(주)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등에 따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

- 에스티엑스엔진(주)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된 이의 채권액은 해당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의 확정시까지 변제를 유보하되,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관련 소송의 결과 에스티엑스엔진(주)가 소위 A-3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발전엔진 16대에 대해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며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하는 부분 중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며,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지 않는 부분은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

- 단, 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 및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시기에도 불구하고, 소위 A-3 프로젝트와 관련된 에스티엑스엔진(주)의 폐사에 대한 제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(위와 같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관련 소송의 결과 에스티엑스엔진(주)에게 확정되는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 중 A3 프로젝트 관련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포함한다)의 변제기는 계약상 원도급업체인 Man Diesel Turbo (이하 “MDT”)로부터 대금을 폐사가 수령한 후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A-3 프로젝트 물품대금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에스티엑스엔진(주)과의 엔진구매계약에 의거하여 폐사가 이를 MDT로부터 수령한 후 에스티엑스엔진(주)에게 변제하며, 만일 향후 MDT가 A-3 프로젝트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변제

라. 회생채권(소액상거래채권)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권리변경 후 변제대상금액의 합산액이 5백만 원 이하인 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6%는 출자전환하고 14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 연도(2017년)에 전액 현금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마. 희생채권(특수관계인채권)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8%는 출자전환하고 12%는 현금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10%를 제1차 연도(2017년)부터 제2차 연도(2018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15%를 제5차 연도(2021년)부터 제7차 연도(2023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40%를 제8차 연도(2024년)부터 제9차 연도(2025년)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, 35%를 제10차 연도(2026년)에 현금으로 변제

2) 개시후 이자

- 개시후 이자는 면제

3. 조세 등 채권

-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
-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% 현금으로 변제
- 현금변제할 금액의 전액을 제1차 연도(2017년)와 제3차 연도(2019년)에 균등 분할하여 변제

4.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

가. 주식병합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(주식의 1차 병합)

- 1)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(액면가 2,500원) 23,792,327주와

- 전환주 2,174,900주 (총 25,967,227주) 대하여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와 전환주 각 2주를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와 전환주 각 1주로 병합
- 2) 효력발생일 :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4영업일

나.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

- 1) 회생담보권,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출자전환 채권액 2,500원을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
- 2) 효력발생일: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1영업일

다.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(주식의 2차 병합)

- 1)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와 전환주 각 10주를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와 전환주 각 1주로 재 병합
- 2) 효력발생일 :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영업일

라. 주식 병합 및 출자전환에 따른 단주 처리

- 1)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

끝.